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혁신도시 추가 지정 신청 허용 》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43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제221404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회부 경과	2
4. 검토의견	3
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혁신도시 추가 지정 신청 허용 (안 제26조제3항 신설 등)	3

I.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제221404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0.

다. 회 부 일 : 2026. 3.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중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2591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

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3. 회부 경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공동 소관 부처로는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지정된바, 2025년 11월 10일 발의된 동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6년 1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송되었음.

이후 제25차 지방시대위원회(2026. 2. 2.)에서 공동 소관 부처에 국토교통부를 추가하는 안건이 심의·의결되고, 정부로부터 국회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협조 요청이 제기된바, 국토교통부 소관에 해당하는 동 개정안이 2026년 3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로 회송됨.

대표발의	제출일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회송일)
		회부일	전체회의 상정 (소위원회 회부)	회부일	전체회의 상정 (소위원회 회부)	
김형동의원	2025. 11. 4.	2025. 11. 11.	-	2026. 1. 7.		2026. 3. 6.

4. 검토의견

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혁신도시 추가 지정 신청 허용
(안 제26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가 소재한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까지에서----- ----- -----.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¹⁾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혁신도시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현행법 제26조²⁾제1항은 혁신도시³⁾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1개의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음(8쪽 참고).

한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이라 함)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는 도청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청과 공공기관을 원활히 이전하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설되는 신도시로⁴⁾,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혁신도시의 지정) ①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지역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 및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도의 사무소(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관할

현행 「도청이전법」에 따른 도청이전시도시로는 충청남도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신도시(이하 “내포신도시”라 함)와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기 위한 신도시(이하 “경북도청신도시”라 함)가 있음.

【 현행 「도청이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현황 】

내포신도시	구 분	경북도청신도시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삼교읍	위 치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9.951㎢(홍성 63%, 예산 37%)	면 적	10.966㎢(안동 58%, 예천 42%)
충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자	경북개발공사
2조 5,692억원	사업비	2조 1,586억원 * 청사건립비 3,920억원 별도
2007년 7월 ~ 2027년 12월	사업기간	2010년 ~ 2027년
46,501명	인 구	23,165명

※ 자료 : 국토교통부(인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2025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그런데, 혁신도시는 2007년 10개 지구 지정 이후 2019년까지 150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완료하였고, 계획인구 대비 87.8%의 목표를 달성하며 산·학·연·관 집적을 기반으로 지역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내포신도시 및 경북도청신도시 모두 1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자족 도시 건설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말 기준 인구는 내포신도시가 4만 6,501명, 경북도청신도시가 2만 3,165명으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의료·문화시설 등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간 계획인구 목표 달성을 비교 】

(단위: 명, %, 2025. 12월말 기준)

유형	도시	실제 인구 (A)	계획인구 (B)	목표 달성률 (A/B)
혁신도시 인구 총합(10개)		234,398	267,000	87.8
도청이전신도시	내포신도시	46,501	100,000	46.5
	경북도청신도시	23,165	100,000	23.2

※ 자료 : 국토교통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개정안은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혁신도시에 비하여 도청 이전에 따른 청사 건립과 기본적인 기반시설 조성 위주의 지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온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혁신도시 지정 및 이에 수반하는 종합적인 특례·지원 체계 부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구 유입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혁신도시는 정부가 2005년에 마련한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별로 1개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온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틀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혁신도시 지정 기준 변경 등 공공기관 입지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각 지방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효과를 감안하고 공론화 등을 거쳐 입지 원칙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참고

혁신도시 지정 현황

지역	위치	면적 (km ²)	인구(천명)		이전완료 공공기관 (개)	사업비 (억원)
			계획	현황 (‘25.12월)		
부산	영도구, 해운대구, 남구	0.935	7	7.2	13	4,127
대구	동구	4.216	22	16.7	10	14,501
광주·전남	나주시	7.361	50	39.5	16	14,175
울산	중구	2.991	20	19.4	9	10,390
강원	원주시	3.585	31	29.4	11	8,396
충북	진천군, 음성군	6.899	39	31.8	11	9,969
전북	전주시, 완주군	9.852	29	29.0	12	15,229
경북	김천시	3.812	27	23.4	11	8,676
경남	진주시	4.093	38	33.7	11	10,577
제주	서귀포시	1.135	5	4.4	6	2,939

* 대전,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20.10월)은 완료됐으나, 구체적인 입지, 면적 등이 정해지는 후속 절차(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실시계획 수립 등)는 이뤄지기 전임.